

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4. 10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3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29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7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(2007. 4. 10)

상정, 심사,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 과장 황 중 익

가. 제안이유

물가관련 정책에 소비자와 구민의 참여비율을 높이고, 행정자치부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외부 민간인 비율을 70%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공무원 위원을 줄이고 외부인사를 추가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(1) 외부인사 참여비율 확대를 위한 공무원 위원 감축

○ 문화체육과장, 재무과장, 교통행정과장,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을 위원에서 삭제

(2) 2007. 1. 2 직제개편에 따른 구의회 추천위원의 소속위원회 변경

○ 복지도시위원회를 행정건설위원회로 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관련 정책에 소비자와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, 2006년 하반기 행정자치부의 자치구 물가관리 실적 평가 항목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소속위원(10인내외)중 민간인 참여비율을 70%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현행 물가대책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문화체육과장, 재무과장, 교통행정과장,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등 4인의 당연직 위원은 삭제하고 마포구의회 의원 1인은 소관위원회가 변경됨에 따라 복지도시 위원회 위원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소관위원회가 변경될 때 마다 동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동 조례안에서는 삭제 조정하고 실제 위원 위촉시 소관위원회소속 의원 1인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, 위원수도 10인내외인 것을 10인 이내로 위원정수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검토가 요망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7. 4. 10.

제 안 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,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원을 일부 변경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가. 위원은 지역경제과장과 물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도록 함.(안 제4조제3항)

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중 “10인내외의”를 “10인이내의”로 하고, 동조 제3항을 다음과
같이 한다.

③ 위원은 지역경제과장과 물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
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수정안 대비표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<u>한 10인내외의</u>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(생 략) ③위원은 마포구의회 의원 1인(<u>복지도시위원회</u> 위원 중 1인), <u>문화체육과장, 재무과장, 지역경제과장, 교통행정과장, 마포세무서 부</u> <u>가가치세과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</u> <u>체의 장, 교수, 언론인, 등 관계전문가 중</u> <u>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</u>	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및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(<u>행정건설위원회</u> -----)- <u>지역경제과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	제4조(위원회 구성) ①----- ----- <u>10인이내의</u> -----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위원은 <u>지역경제과장과 물가 관련 분야에</u> <u>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</u> <u>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

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3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물가관련 정책에 소비자와 구민의 참여비율을 높이고, 행정자치부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외부 민간인 비율을 70%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공무원 위원을 줄이고 외부인사를 추가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가. 외부인사 참여비율 확대를 위한 공무원 위원 감축

- 문화체육과장, 재무과장, 교통행정과장,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을 위원에서 삭제

나. 2007. 1. 2 직제개편에 따른 구의회 추천위원의 소속위원회 변경

- 복지도시위원회를 행정건설위원회로 변경

3. 개정근거

- 행정자치부 물가관리 평가항목중 심의위원회 민간인 참여비율 70%
【서울시 생활경제과-26010, 2006. 12. 1】

4. 조 례 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07.01.25 ~ 2007.02.14) 결과, 특이사항 없음

나.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·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7.03.29)
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”을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중 “마포구의회 의원 1인(복지도시위원회 위원중 1인), 문화체육과장, 재무과장, 지역경제과장, 교통행정과장,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”을 “마포구의회 의원 1인(행정건설위원회 위원중 1인), 지역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: <u>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</u>	제명: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시행령</u> 제4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「 <u>지방자치법 시행령</u> 」
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및 ② (생략) ③위원은 마포구의회 의원 1인 (북지도시위원회 위원 중 1인), <u>문화체육과장, 재무과장, 지역경제과장, 교통행정과장,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</u> 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, 교수,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	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및 ② (현행과 같음) ③..... (<u>행정건설위원회</u>). <u>지역경제과장</u>